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1BL	9,837	①	옥과면 옥과리 236-7번지 일원	9,83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조성후 별도의 획지로 분할 할 수 있음

-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BL	①	옥과면 옥과리 236-7번 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li> <li>•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에 의한 부대시설</li> <li>• 「주택법」 제2조 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장에 의한 복리시설</li> </ul>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 이하</li> </ul>	
			용 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 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층 이하</li> </ul>	

- 라.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없음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도 : 해당없음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 라.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24호

공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계획 승인(전북장수 지역수요맞춤형)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장수 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지역수요맞춤형)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 1. 사 업 명 : 전북장수 1BL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 2. 사업시행자
  -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30-3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7,097,00㎡

다. 대 지 면 적 : 7,097,00㎡

라. 연 면 적 : 8,403.5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20세대, 지상6~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9,242,958천원 (주택도시기금 6,307,360천원)

5. 사업기간 : 2020. 04 ~ 2022.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관계 도서는 장수군청 민원과, 전북도청 지역경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 지형도면 고시 내용

전북장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소재지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리 430-3번지 일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지분	성 명	권리 부분	주 소	성명	
1	장수리	430-3	답	2,245	2,245	장수군 장수읍 257	1/1	김정희				
2	장수리	430-4	답	1,238	1,238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62	1/1	최순예	근저당권/ 지상권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농협은행 주식회사	
3	장수리	430-5	답	1,109	1,109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60, 가동 305호	1/1	김광철				
4	장수리	430-12	답	339	339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28	1/1	박정금	근저당권/ 지상권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73	무진장축 산업협동 조합	
5	장수리	431-2	답	1,127	1,127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28	1/1	정원상	근저당권/ 지상권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73	무진장축 산업협동 조합	
6	장수리	432-2	답	911	911	장수군 장수읍 준비취락길 13-10	1/1	최용남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농협은행 주식회사	
7	장수리	432-7	답	128	128	장수군 장수읍 준비취락길 13-10	1/1	최용남				
계		7필지		7,097	7,097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33,646,225	-	533,646,225	100.00	
도 시 지 역		5,474,447	-	5,474,447	1.03	
주거지역	소 계	1,231,139	증) 5,649	1,236,788	0.24	
	제1종일반주거지역	1,057,363	감) 1,448	1,055,915	0.20	
	제2종일반주거지역	91,986	증) 7,097	99,083	0.02	
	준주거지역	81,790	-	81,790	0.02	
상업지역	소 계	188,800	감) 5,649	183,151	0.03	
	일반상업지역	188,800	감) 5,649	183,151	0.03	
공업지역	소 계	81,669	-	81,669	0.02	
	준공업지역	81,669	-	81,669	0.02	
녹지지역	소 계	3,972,839	-	3,972,839	0.74	
	보전녹지지역	228,308	-	228,308	0.04	
	생산녹지지역	752,460	-	752,460	0.14	
	자연녹지지역	2,992,071	-	2,992,071	0.56	
도 시 외 지 역		528,171,778	-	528,171,778	98.97	
관리지역	소 계	173,319,261	-	173,319,261	32.47	
	보전관리지역	67,667,153	-	67,667,153	12.68	
	생산관리지역	62,048,421	-	62,048,421	11.62	
	계획관리지역	43,603,687	-	43,603,687	8.17	
농림지역		337,736,515	-	337,736,515	63.29	
자연환경보전지역		17,116,002	-	17,116,002	3.21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m <sup>2</sup> )	용적률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장수읍 장수리 430-3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448	250	장수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장수읍 장수리 430-5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649	250	장수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①	장수 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장수읍 장수리 430-3번지 일원	-	증) 7,097	7,097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변경사유
신설	①	장수 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장수읍 장수리 430-3번지 일원	7,097	장수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없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번호	면적 (m <sup>2</sup> )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1BL	7,097	①	장수군 장수리 430-3번지 일원	7,09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 설

※ 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조성후 별도의 획지로 분할 할 수 있음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BL	①	장수군 장수리 430-3 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li> <li>「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에 의한 부대시설</li> <li>「주택법」 제2조 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장에 의한 복리시설</li> </ul>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0% 이하</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층 이하</li> </ul>	

라.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도 : 해당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 ●국세청고시제2020-11호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073호, 2020년 3월 23일) 제109조의4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는 자동차의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및 부칙(제17073호, 2020.3.23 개정) 제8조에 따라 2020년 3월 1일(이하 “적용 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하 “적용 종료일”이라 한다)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는 자동차의 세액 환급(공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동차”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물품을 말한다.

2.“판매장”이란 하차장·직매장·지점·대리점 등 제3조제2호의 자동차를 보유한 장소로서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장소를 말한다.

3.“시행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073호, 2020년 3월 23일)의 공포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과세물품)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일의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동차
2. 적용 개시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적용 개시일 오전 0시에 판매장에 보유한 것으로서 적용 개시일부터 적용 종료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동차

제4조(적용대상자)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이 고시를 적용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
2. 제3조제2호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및 판매장을 운영하는 자
3. 제3조의 자동차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

제5조(감면 시행일 전 반출물품의 신고방법) ① 제4조제1호의 적용대상자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고시 제3조제1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제출하는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감면물품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세금계산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표, 배송장 및 인수증 등) 등의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부표1)와 그 내역을 수록한 전산파일(Excel)

② 제4조제1호의 적용대상자는 제1항의 증명서류를 각 제조장별로 작성하여 2020년 4월 25일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호의 적용대상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